

감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목표, 구성, 권한과 책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감사기능을 활성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필요 경비에 대하여 회사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및 책임)

-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제5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 (회의의 종류)

- ①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최소 회일 하루 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구두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1조 (결의방법)

- ① 위원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로의 발언을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 화상회의 등 유·무선 통신장비를 사용하여서도 회의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케 할 수 없다.
- ④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위원의 의결권을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4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결과
2. 내부감사부서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3.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4. 내부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5. 업무·재산 조사
6. 자회사의 조사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9.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10. 감사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④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외부감사인(이하‘감사인’이라 한다) 선정 및 변경·해임
2.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3. 외부감사인과의 보수 등에 관한 계약
4.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수행의 승인
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7.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와 감사관련 보고
8.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9. 외부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⑤ 기타사항

1. 감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2.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3. 경영공시의 적정성 검토
4.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능 담당부서의 전문성 검토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장. 감사인

제15조 (선정)

- ①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한다.
- ② 감사인을 선정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감사인을 연속하는 매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인의 변경)

위원회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①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 ②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④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7조 (감사인의 해임)

위원회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해임할 수 있다.

- ①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③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④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8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위원회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7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20조 (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회사 경영진의 참석 없이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위원회와 감사인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 적정성
- ②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③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 논의 및 내부감사업무 반영

제21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전담부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전담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2. 전담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3. 전담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제23조 (직무활동지원)

- ① 감사위원에게는 위원회 업무 관련 출장여비,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외부전문가 자문료 등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감사위원의 안건 검토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및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